
부산 검찰의 역사와 주요활동에 관한 연구

최종술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目 次

I. 서론	IV. 부산 검찰의 역사적 변천
1. 연구의 목적	1. 부산고등검찰청
2. 연구의 방법	2. 부산지방검찰청
II. 우리나라 검찰의 역할과 조직	V. 부산 검찰의 주요활동과 사례
1. 검찰의 역할과 기능	1. 주요 수사활동
2. 검찰의 조직구조	2. 첨단 수사활동
III. 우리나라 검찰활동의 역사	3. 지원활동
1. 근대 이전의 검찰활동	V. 결론
2. 근대 이후의 검찰제도	참고문헌, 국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검찰은 범죄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실현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권력작용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검찰권 행사의 주체인 검사를 검찰이라 하기도 한다. 검찰권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에서

의 행정권에 속하나, 그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특한 국가권력작용이다.

검찰권은 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재판작용을 제외한 모든 작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법상 차지하는 지위가 매우 높으며, 이를 행사하는 검사의 책임도 막중하다. 검찰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국가기관으로 탄생되었다. 아울러 검찰제도는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하는 국가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창설된 것이며, 또한 이에 봉사하는 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자를 구금, 수사, 소추하는 검찰기관과 심리, 재판하는 재판기관도 분화되지 아니하였다.

1895년 3월부터 그해 5월 사이에 사법 및 검찰제도의 기원이 되는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고, 「재판소 처무규정 통칙」 등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법 및 검찰제도의 시초이다.

일제 통감부시대 사법권의 침탈과 일본침략기의 민족항일기를 거쳐 광복 이후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으로 「법원조직법」이 제정, 공포되어 법원행정은 사법부로부터 대법원으로 이관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한 사법권의 독립을 보게 되었다.

또한, 1948년 8월 2일에는 군정법령으로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어 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독자적인 검찰제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

법(법률 제81호)」이 공포·시행되어 현재 검찰제도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부산검찰은 1896년 1월 20일 동래에서 부산재판소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고, 1912년 4월 1일에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이 설치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서, 미군정 시대인 1948년 8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이 개칭한 이래, 여러 번의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와 조직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그리고 부산 검찰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부산 검찰의 주요 활동을 그 사례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조직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검찰이 무엇이며,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검찰조직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조직, 고등검찰청의 조직, 그리고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시대 구분은 근대이전의 검찰활동과 근대 이후의 검찰활동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근대이전의 검찰활동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이며, 근대 이후의 검찰활동은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로 구분한다.

셋째, 부산검찰의 역사적 변천은 부산고등검찰청 및 부산지방

검찰청의 연혁과 현황, 조직,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살펴본다.

넷째, 부산 검찰의 주요 활동은 크게 3영역으로 구분한다. 즉, 주요 수사활동, 첨단 수사활동 그리고 지원활동으로 구분한다. 주요 수사활동은 마약범죄 수사, 부정부패 수사, 조직폭력범죄 수사, 지적 재산권침해 범죄수사로 구분한다. 첨단 수사활동은 과학수사, 기술유출범죄 수사, 사이버범죄 수사, 범죄수익환수 수사로 나누고, 지원활동은 소년선도보호,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주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에 대한 조사이다. 부산시 역사와 관련되는 문헌, 부산검찰의 역사와 관련되는 문헌 뿐만 아니라, 이론편, 논문, 각종 보고서 등을 조사, 활용한다. 특히, 부산시사, 부산검찰의 역사 등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한국행정사, 한국검찰사, 한국사, 행정학 등 문헌을 총망라하여 검토한다.

둘째, 신문, 문서, 회의자료, 브리핑자료 그리고 동영상, 인터넷 등 시각적 자료의 활용이다. 먼저 문서자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검찰기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문서자료를 활용한다. 회의자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의 역사에 관한 기관내부자료, 내부보고자료 등을 분석, 검토하여 활용한다. 인터넷 자료는 부산광역시청,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지청 등의 공식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관련자료나 문헌들이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한다. 검찰 행정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의미를 분석,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론¹⁾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의 방법이 된다. 먼저, 얻어진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해석을 구축하고 이것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수집된 질적 자료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작업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자료의 정리와 종합에서부터 일반화의 여부를 가늠하는 작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업으로 수행된다. 특히, 자료의 분류, 설명의 구축을 포함하는 모든 분석 작업의 수행은 전략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네째, 질적 연구로서 내용분석(Content) 또한 중요한 연구의 방법이 된다. 내용분석은 말 그대로 관련 문헌, 논문, 문서나 각종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주제와 관련되는 사료, 회의자료, 보도자료, 기록물 등의 문서나 시각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II. 우리나라 검찰의 역할과 조직

1. 검찰의 역할과 기능

1) 검찰의 개념

검찰은 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민

1) Jennifer Mason,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 Sage Publication, 1996.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예컨대, 군대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검찰은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²⁾.

검찰은 범죄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며, 여러 행정부처의 법치행정을 자문하고 감시하는 자문·감시기관이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사정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까지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처벌하는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적 울타리로서, 검찰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요컨대, 검찰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이다.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의 법집행기관이다.

2) 검찰의 역할과 기능

검찰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³⁾.

첫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참조.

3) 검찰청법 제4조

둘째, 검찰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등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검찰은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적법절차 준수, 승복하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검찰의 구성

검찰은 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검사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⁴⁾.

검사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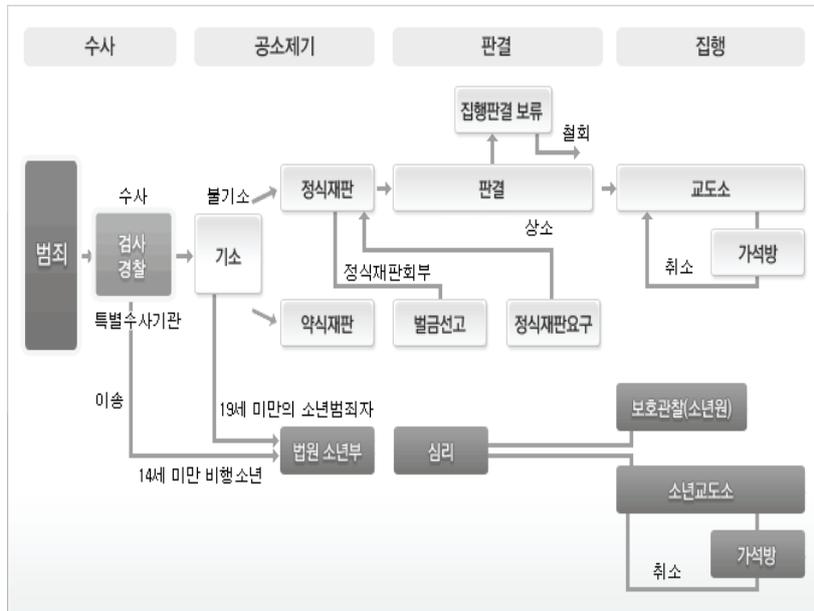
첫째,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둘째, 범죄수사에 관해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4) 검찰청법 제6장 참조.

5) 검찰청법 제4조 참조.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그림 2-1> 검사의 역할6)



(2) 검찰수사관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수사관의 업무는 첫째,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6)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참조.

둘째,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셋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넷째, 그 밖의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이다.

(3) 검찰실무관

실무관은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행정 관련 사무를 보조한다. 검사,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의 보조로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보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범죄수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2. 검찰의 조직구조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1) 대검찰청

각종 사건수사는 물론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총지휘한다.

(1) 검찰총장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

7) 검찰청법 제5조 참조.

청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임기는 2년이다.

(2)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

보안에 관한 사항,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사항, 문서 관리 사항,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 사항 등 관장하는 운영지원과가 있고, 청사 관리사항, 검찰 국유재산 관리사항 등을 담당하는 관리과, 그리고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등을 담당하는 비상계획담당관이 있다.

(4) 기획조정부

주요 업무기획,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 행정관리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책기획과가 있고, 검찰 전산업무의 개발, 운영, 전산장비, 자료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검찰 통신 운영 및 통신 기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과가 있다.

(5) 중앙수사부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등 중앙수사부장 보좌하는 수사기획관이 있다. 중앙수사 1과, 2과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 사건의 수사를 관장한다. 첨단범죄수사과는 검찰총

장이 명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규정된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관련된 국제수사공조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및 수사지원 사무를 수행한다.

(6) 형사부

형사 1과는 경제, 교통사건, 검찰사무 보고 및 정보, 진정, 내사, 탄원 기타 내사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형사 2과는 환경, 보건, 소년, 여성 사건의 검찰 사무지휘 감독등 업무를 관장한다.

(7) 강력부

조직범죄과는 강력 및 조직범죄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마약과는 마약사건에 관한 지휘감독 및 분석, 조사 등에 관한 업무, 마약수사공무원 배치 및 국내외 교육훈련, 마약수사조직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마약수사예산 편성 및 마약류보상금지급, 마약류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마약수사공조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범죄인인도 및 마약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피해자인권과는 범죄 피해자 지원, 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 공안부

공안기획관은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공안부

장을 보좌하고, 공안1과는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공안2과는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공안3과는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9)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는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과는 재산형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0) 감찰부

감찰1과는 사정업무,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감찰2과는 사무감사, 기강감사,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감찰3과는 사무감사, 기강감사,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1)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은 범죄정보 업무에 관하여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범죄정보1담당관은 부정부패사범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범죄정보2담당관은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12)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은 과학수사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과학수사담당관은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과학수사 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디지털수사담당관은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3) 기타

이외에도 대변인, 검찰연구원, 비서관이 있다.

2) 고등검찰청

고등검찰청은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고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행정소송을 비롯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진행을 돕는다.

(1) 고등검찰청 검사장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2)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고등검찰청 사무국

총무과는 보안에 관한 사항,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에 관한 업무분장을 담당한다. 사건과는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수사지휘 등에 관한 업무분장을 담당한다. 소송사무 제1,2과는 송무부 관장사무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관리과는 검찰청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등에 관한 업무분장을 담당한다.

(4)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형사부는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기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공판부는 형의 집행(재산형 제외)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상소 등에 관한 업무분장을 담당한다. 송무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은 18개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위치하며,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방검찰청 검사장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3인, 인천·수원·대구·부산지방검찰청에는 2인, 나머지 지방검찰청에는 1인을 두며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고 소속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분장

각 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4개부, 부산지방검찰청에 10개부, 인천지방검찰청에 9개부, 수원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에 8개부, 광주지방검찰청에 7개부, 대전지방검찰청에 6개부, 창원지방검찰청에 5개부가 있고 각 부 밑에는 과가 있다.

4) 지방검찰청 지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40개 지방법원 지원에 대응하여 위치하며 40개 지청이 있다.

(1) 지방검찰청 지청장

각 지방에 1인의 지청장이 있고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대구서부, 부산동부, 순천지청에

1인의 차장검사를 두었고, 지청 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분장

지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가 있다.

Ⅲ. 우리나라 검찰활동의 역사⁸⁾

1. 근대 이전의 검찰 활동

1) 고조선 시대

고조선을 비롯한 부족국가시대의 검찰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형률이나 율령을 통하여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이것마저도 문헌상의 한계는 있지만,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고조선 사회의 법률으로 '팔조금법(八條禁法)'('禁法八條'라고도 한다)이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과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에는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教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법 자체의 성질로 보아 기자와는 전혀 무관한 고조선 사회의 관습법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른바 낙랑조선(樂浪朝鮮)의 범금8조(犯禁八條)라는 것은 조선 본래의 범금이었던 것이다. 다만, 이것은 8

8) 우리나라 검찰활동의 역사 구분 기준은 근대이전과 근대이후,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조의 교(敎)가 아니라 그 자체가 범금·금약(禁約)의 성격을 띠고 있다.

팔조금법(八條禁法)의 전문은 전해지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 전한다.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人爲其家奴, 女子爲婢, 慾自讀者, 人五十萬· · · ·』

즉,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錢)을 내야 한다는 것 등이다. ①은 생명에 관한 것, ②는 신체에 관한 것, ③은 재산에 관한 것이다.

요컨대, 고조선시대에는 적어도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등의 죄목을 정한 형벌법령이 있었다. 이는 당시 지배세력이 이를 집행할 만큼 어느 정도의 체제와 힘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법금을 통해 개인의 생명과 신체생활에 의한 노동력 및 사유재산, 가부장적 가족제 등을 보장하려는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다⁹⁾.

고조선에 있어서 검찰활동에 관한 뚜렷한 기록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형률이나 기록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체계적 문헌이나 기록은 찾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나 관련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尹白南, 朝鮮形政史, 文藝書林, 1948, pp. 7~37; 國立警察專門學校, 警察制度史, 警察專門學校 出版社, 1955, pp. 5~16참조.

(1) 고구려

고구려에 존재했던 죄목으로는 모반죄(謀反罪), 수성강적(守城降敵)·임진패배죄(臨陳敗北罪), 살인죄(殺人罪), 절도죄(竊盜罪), 가축살해죄(家畜殺害罪), 권력남용죄(權力濫用罪), 무고죄(誣告罪), 불효죄(不孝罪) 그리고 국상불효죄(國相不從罪) 등이 있었다.¹⁰⁾

고구려의 형사사법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三國史記 卷四八九 列傳 第九 淵蓋蘇文』에서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하고, 왕제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스스로가 대막리지(大莫離支)가 되어 국사를 전제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또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집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형사사법조직은 여전히 군조직과 분화되지 않았으며, 다만 그 행사에 있어서 관등이 제1관등에서 제5관등으로 분화됨에 따라 계층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백제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율령반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나,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국가기틀이 확립된 근초고왕때 반포되었다는 설이 더 유력하다.¹¹⁾ 율령의 모범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고구려와 비슷하여 반군, 퇴군, 살인자는 참하고, 뇌물을 받은 관리와 도둑은 3배 이상의 배상을 물게 하며, 음란한 여인은 남편집 노비로 만드는 형벌이 있었다. 구당서(舊唐書) 『백제전』에 따르면, 관제 중 내신좌

10) 정진환, 고대 고조선 및 조선조의 경찰행정체도의 내용, 한국행정사학지 제3권 제5호, 1994, p. 34.

11) 노중국, 백제정치사 연구, 일지각, 1997, pp.260~262. 참조

평(內臣佐平)은 선납사(宣納事)를 장악하고, 내두좌평(內頭佐平)은 예의(禮儀)와 숙위(宿衛)를 장리(掌理)하여 그 중 조정좌평(朝廷佐平)이란 벼슬이 형옥(刑獄)을 장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형률을 보면,

『版送者諫籍其家 殺人者輪奴婢三讀罪 吏受賄及盜三倍償 銅終身』

이 있는데, 이것은 『三國史記 卷二十四 古爾王 27年(A. D. 206年)條』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백제에는 형옥을 다스리는 벼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라

신라의 사법제도는 그 죄목(罪目)에 군, 부, 모, 조부, 조모를 죽인자에 대한 오송죄(五送罪), 외환죄(外患罪), 모반죄(謨反罪), 모대역죄(謀大逆罪), 지역사불고언죄(知逆事不告言罪), 불온국사죄(不愠國事罪), 배송영사죄(背公營私罪) 그리고 절도죄(竊盜罪) 등이 있었으며, 형벌로는 족형(族刑), 차열형(車裂刑), 사지해형(四肢解刑), 엽시형(葉市刑), 참형(斬刑), 자진형(自盡刑), 유형(流刑) 그리고 장형(杖刑) 등의 8가지가 있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고 있다.

3)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고려율법 71개조가 존재하였다. 중앙사법기관으로서 형부가 있었고, 전옥서에서 죄수를 관장했다. 사헌부는 관헌의 규찰탄핵 임무를 수행하였고, 순군만호부는 포도, 금란을 관장하였다. 특히, 순군만호부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도적을 막고, 변란을 금한다는 방도금란(防盜禁亂)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형벌의 종류에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있었다.

특히, 순군만호부는 원나라의 정치적 지배를 받으면서 종래 포도기관(捕盜機關)이던 야별초가 혁파되자, 대신 충렬왕 초에 몽고의 제도를 모방한 순마소(巡馬所)가 설치되었다.

순마소에는 도적을 수색해 체포하는 군졸, 즉 순마군 또는 순군이 있었으며, 체포된 자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순마소는 왕명을 받들어 도적·난폭자를 다스리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방수군(防戍軍)에 선발되었을 때에는 방수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신(將臣)을 다스리는 등 일종의 금군 역할도 하였다.

순군제가 충렬왕 말년에는 순군만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관원으로 도만호(都萬戶)·상만호(上萬戶)·만호(萬戶)·부만호(副萬戶)·진무(鎭撫)·천호(千戶)·제공(提控) 등 원나라 제도에 따르는 군관제를 채택하였다. 기능은 앞서 순마소 직능에 더해 민간의 다툼이나 소·말의 도살을 취척(取締)하고 사헌(司憲)과 협동해 약탈·음란자도 체찰(逮擦)하였다.

1369년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바뀌며, 관원도 제조(提調) 1인, 판사(判事) 3인, 참상관(參上官) 4인, 순위관(巡衛官) 6인, 평사관(評事官) 5인을 두었다. 이는 공민왕의 반원개혁정책에 따른 관제개편이었을 뿐 직능상의 변화는 없었다. 우왕 때 다시 순군만호부로 바뀌면서 관원도 과거 만호부 때로 환원되었다.

4)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치적을 조사 규탄하며 억울한 형벌을 밝히는 업무를 관장하는 사헌부가 있다. 그리고, 형조는 하급 재판 기관의 감독 및 수령이 관장하는 일반사건의 상소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의금부는 국사범과 문무양반의 심문 및 처벌을 관장하였다. 그리고 한성부는 일반행정과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각종 민·형사 사건의 소송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관찰사, 수령, 암행어사 등의 지방사법기관이 존재하여 일반백성을 관리하였다. 주요 법전으로 대명률, 경제육전, 속육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이 있다. 형벌의 종류에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있었고, 상소제도가 운영되었다.

특히 의금부(義禁府)는 조선시대 특별사법 관청이며, 조옥(詔獄)·금부(禁府)·왕부(王府)·금오(金吾)라고도 불렀고, 그 역할은 포도(捕盜)·순작(巡緝)·금란(禁亂)의 임무를 관장하였다.¹²⁾ 고려말기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가 태종 2년에 순위부(巡衛府), 태종 3년에는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태조14년에 의금부(義禁府)로 개칭된 것이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고, 왕족의 범죄 및 현관·음관으로 관규를 문란하게 한 자, 국사범, 모역죄, 반역죄 등에 관한 사건, 사교에 관한 금령을 범한 자, 상인의 왕실 및 왕족에 대한 범죄사건, 사헌부에 탄핵한 사건 등 중요한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2. 근대 이후의 검찰제도

1) 갑오개혁 이후

1894년 6월 25일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갑오개혁이 시작되

12) 李相寔, 義禁府考, 歷史學研究 VI, 1975 참조;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의금부’ 참조.

었다. 이후 각 아문관제를 공포하였고, 형조를 폐지하고 법무아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의금부를 의금사로 개칭, 법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의금사를 법무아문권설재판소로 개칭하였다. 여기서 최초로 「재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판·검사가 아닌 법무대신, 협판, 참의 등이 재판을 하였다.

1895년 3월 25일에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법률 제1호 1895. 04. 01. 시행)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근대검찰제도 도입으로 볼 수 있으며, 최초로 「검사」라는 용어 및 관직이 등장하였다. 검사는 조직체계상 독립된 검찰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수사·소추권을 행사하였다.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재판소의 5종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당분간 지방관이 지방재판소 검사를 겸임하도록 허용하였다.

이후 법부관제가 공포되어 법무아문을 법부로 개편하였고, 1895년 4월 1일에는 최초 검사 3명이 임관되었다¹³⁾. 이와 함께 검사의 직무권한을 규정하였다.

1899년 5월 30일에는 「재판소구성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칭하고, 지방재판소를 지방행정기관에 합설하였다.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가 조인되어, 시정 개선의 미명하에 내정간섭이 본격화되었고, 8월 22일에는 「한일의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가 조인되고, 일본인 법부고문이 용빙(傭聘)되었다¹⁴⁾.

13) 당시 이종직, 안영수를 고등재판소 검사로, 안영수, 김기용을 법부 검사로 임명하였다고 함.

14)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참조.

2) 일제강점기¹⁵⁾

1905년 4월 29일에는 형법대전이 공포되었고, 11월 17일에는 한일협상조약(을사보호조약)이 강요에 의하여 체결됨으로서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정치를 규정하였다. 이어 11월 22일에는 한국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일본 칙령이 공포되었고, 12월 20일에는 일본이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였다.

1907년 7월 24일에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 조인되어, 대한제국의 법령제정권과 고등관리임명권을 일본이 장악함으로써 사법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재판소구성법」,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재판소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의 4급 3심체도가 실시되었고, 각 재판소에 대치하여 검사국을 설치하였다.

1909년 7월 12일에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가 조인되어,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완전 박탈되었다. 10월 16일에는 일본 칙령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었고, 10월 28일에는 재판소구성법, 법부관계 등 대한제국의 사법관련 주요법령이 폐지되었다. 10월 31일에는 대한제국 재판소와 법부가 폐지되었고, 11월 1일에는 통감부재판소가 개칭되어, 통감부 사법업무가 개시되었다.

1910년 8월 22일에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의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어, 8월 29일에는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이 공포되었다. 이로서 대한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10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공포하여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고등법원

15)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1978, 참조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참조.

4급 3심제도가 확립되었다.

1912년 3월 18일에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급 3심제가 실시되었고, 지방법원 지청과 검사분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선형사령을 공포하였다.

1944년 2월 15일에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전시특례가 공포되어 2심제가 실시되었다.

3)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¹⁶⁾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법률 제81호)」이 공포·시행되면서, 검찰제도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1953년에는 인권상담센터가 설치되었고, 1954년에는 「범죄보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공포되었다. 1961년에는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가 설치되었고, 1965년에는 검찰, 세관, 경찰 그리고 군의 범죄수사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밀수특별합동수사부가 설치되었다. 이 합동수사부는 1970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기까지 활동을 했다. 1973년에는 대검찰청에 사무국, 공안국 그리고 공판송무부가 새롭게 설치되었고, 수사국은 특별수사국으로 재편되었다. 1978년에는 심리분석실이 대검찰청에 설치되어 거짓말탐지기조사와 같은 과학수사기술을 도입하였다.

1980년에는 민원실을 각 검찰청에 설치하였고, 1982년에는 전화와 편지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받을 있도록 하였고, 최초의 여자 검사 2명이 서울지방검찰청에 배치되었다. 1986년에는 서면조사실이 대검찰청에 설치되었다. 1988년에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6) 대검찰청 영문홈페이지(<http://www.spo.go.kr/eng/service/history.jsp>)참조.

가 설립되었다. 1989년에는 공공안전위반사범을 척결하기 위하여 합동수사본부와 마약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그리고 음성분석실과 법의학실이 또한 설치되었다.

1991년에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대검찰청에 설치되었고, 과학수사과, 환경범죄과, 유전자감식과 그리고 마약약물검사과가 대검찰청에 설치되었다. 1992년에는 한국 최초의 유전자 감식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1993년에는 21세기연구계획단이 대검찰청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검찰서비스의 장기발전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시민청원검찰제도가 6개 지방검찰청으로 확대되었다. 1994년에는 검찰행정의 정보전산화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설치되었다. 1995년에는 대검찰청이 서울특별시 서소문동에서 서초동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 1998년에는 검찰타임캡슐이 설치되었고, 법의학과와 과학수사과가 과학수사과로 통합되었다.

2000년에는 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서울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설치되었다. 디지털과학수사과가 새롭게 대검찰청에 설치되었고, 컴퓨터 수사부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설치되었다. 행정정보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유전자 감식 기술이 한국 최초로 증거로서 인정되었다. 2001년에는 검찰 서비스에 대한 전자정보관리시스템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되었고, 특별수사지원과가 대검찰청에 설치되어, 검찰의 특별수사분야 예를 들면, 세금, 금융, 안전 등의 검찰활동을 지원해 주었다. 2003년에는 마약분석센터가 대검찰청에서 운영되었고, 2005년에는 과학수사와 고도기술범죄수사과가 21세기 과학정보기술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2006년에는 돈세탁수사 및 재산몰수를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대검찰청에 설치되어 범죄로부터 불법적으

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는 활동을 하였다. 2007년에는 산업스파이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산업스파이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08년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설치되었고, 대검찰청에 국제협력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국제협력집행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역의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국제마약거래 퇴치에 협력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IV. 부산 검찰의 역사적 변천

1. 부산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부산고등검찰청은 항고 및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 형사 항소심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산하청 검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부산고등검찰청의 연혁과 현황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연혁과 현황

(1) 연혁¹⁷⁾

1896년 1월 20일 동래에서 부산재판소가 개설된 이래 식민지 시대, 미군정시대를 거치면서 수차례에 걸쳐 관련법이 개정되었

17)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spo.go.kr/highbusan/index.jsp>).

다. 부산검찰의 조직과 관할구역은 수차례 조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정부수립 이후, 이전의 기구와 인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1948년 11월 6일 초대검사장에 엄상섭 검사장이 임명됨으로써 부산지방검찰청은 출범하였고, 부산 및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으로서 그 역사적인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9월 12일에는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청사가 준공되어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번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청사는 동일블록에 위치한 법원과의 유기적이면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의 법조타운 형성과 시청, 경찰청 등 부산의 주요 행정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1> 관할구역¹⁸⁾



현재 부산고등검찰청은 행정구역상 2개시인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1개도인 경상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18) 상계 홈페이지 참조.

관할검찰청은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진주, 마산, 통영, 밀양, 거창지청)이다.

(2) 현황

부산고등검찰청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수사지휘관서는 지방경찰청 3개, 경찰서 41개, 해양경찰청 1개, 해양경찰서 3개이다.

부산고등검찰청의 인원과 예산은 각각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1> 부산고등검찰청의 인원¹⁹⁾

(단위 : 명)

구 분	당 청			관 내		
	정 원	현 원	결 원	정 원	현 원	결 원
계	89	88	-1	1,402	1,385	-17
검 사	16	14	-2	262	237	-25
일 반 직	42	42	0	824	832	+8
기 능 직	31	32	+1	316	316	0

19) 2009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부산고등검찰청 2009년 10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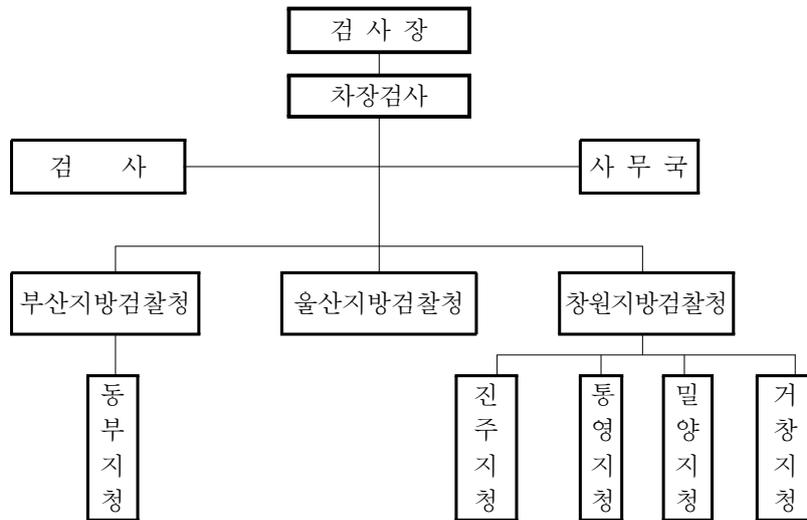
<표 4-2> 부산고등검찰청의 예산²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 건 비	물 건 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예 산 액	6,776,268	4,310,781	2,085,431	208,524	171,532
집 행 액	5,861,092	3,652,831	1,873,448	173,067	161,746
잔 액	915,176	657,950	211,983	35,457	9,786

2) 조직과 업무

<그림 4-2> 부산고등검찰청의 조직²¹⁾



20) 상계자료 참조.

21) 상계자료 참조.

부산고등검찰청의 조직과 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²²⁾.

(1) 검사장

검사장은 부산고등검찰청의 수사사무 및 일반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와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2) 차장검사

검사장을 보좌하며, 검사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검사실

검사실에서는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기강에 대한 사항, 공판에 관한 사항, 상소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4) 총무과

총무과에서는 보안,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검찰종합통신망·홈페이지·전산·통신·방송장비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2)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spo.go.kr/highbusan/index.jsp>)

(5) 사건과

사건과에서는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통계에 관한 사항,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지구배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부산지방검찰청

1) 연혁과 현황

(1) 연혁

1912년 4월 1일에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이 설치되었다. 광복 이후인 1948년 8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이 개청하였다. 1959년 7월 2일에는 구 부산고등법원 청사(서구 부민동 2가 1)로 부산지방검찰청이 이전하였다. 또 1984년에는 구 경남도청 건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2001년 9월 17일 현청사(연제구 거제동 1501)로 이전하였다.

(2) 현황

관할하는 행정구역은 부산광역시의 15개구, 1개군이다. 면적은

765.64km² (전국의 0.76%)이며, 관할인구는 약 359만명 (전국의 7.1%)이다. 수사지휘관서는 일반사법경찰기관으로 부산지방경찰청, 14개 경찰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이며, 특별사경찰기관으로 부산지방노동청 등 50개 관서(본청 43개 관서, 동부지청 7개 관서)가 있다²³⁾.

본청은 검사장, 2차장, 10부, 1국, 11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지청은 지청장, 차장, 3부, 1국, 4과로 되어 있다. 인원과 예산은 <표 4-3>, <표4-4>와 같다.

<표 4-3> 부산지방검찰청의 인원²⁴⁾

(2009. 9. 28. 현재)

청별	구분	계	검 사	일반직		기능직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관 내	정 원	640	122	391	127		
	현 원	653	115	403	135		
	결 원	+ 13	- 7	+ 12	+ 8		
본 청	정 원	490	92	304	94		
	현 원	501	88	313	100		
	결 원	+ 11	- 4	+ 9	+ 6		
동 부	정 원	150	30	87	33		
	현 원	152	27	90	35		
	결 원	+ 2	- 3	+ 3	+ 2		

* 파견검사 14명 (해외 7명, 타기관 7명)

23) 부산지방검찰청홈페이지 (<http://www.spo.go.kr/busan/index.jsp>) 참조

24) 2009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부산지방검찰청, 2009. 10. 16

<표 4-4> 부산지방검찰청의 예산²⁵⁾

(단위: 천원)

구분 청별	예 산 배정액	예산 집행액(2009. 1. 1. ~ 8. 31.)				잔액
		계	인건비	수사활동	청운영경비	
관 내	29,068,688	24,483,744	18,042,495	3,153,418	3,287,831	4,584,944
본 청	21,584,681	18,326,672	13,702,628	2,186,316	2,437,728	3,258,009
동 부	7,484,007	6,157,072	4,339,867	967,102	850,103	1,326,935

2) 조직과 업무²⁶⁾

(1) 검사장

검사장은 부산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2) 제1차장검사

형사제1·2·3·4·5부,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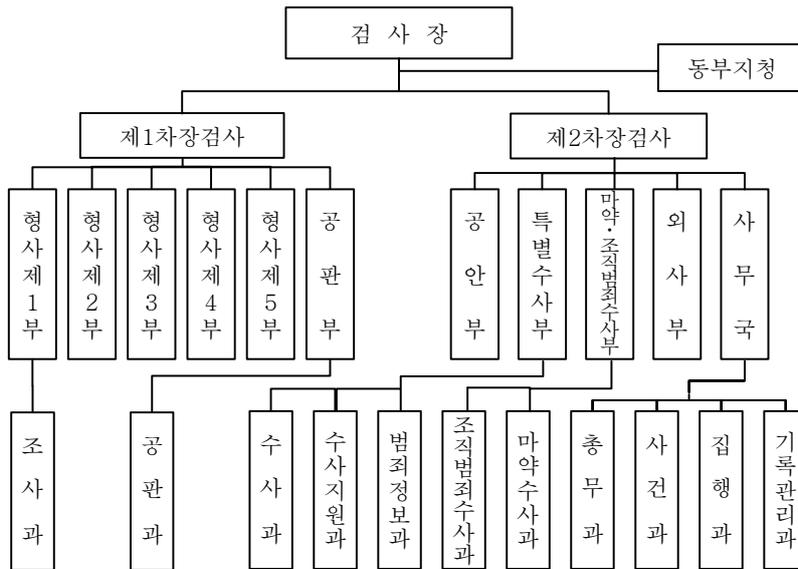
(3) 제2차장검사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25) 상계자료 참조.

26) 부산지방검찰청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index.jsp>) 참조

<그림 4-3>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²⁷⁾



(4) 형사제1·2·3·4·5부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 소년 또는 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소년범죄 예방활동 및 선도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형사 제1부는 지휘관서가 동부·서부·연제경찰서, 교정기관이며, 감찰, 인권, 신용, 보험, 적재산권, 금융, 공정거래, 병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형사제2부는 지휘관서가 부산진·영도·해양경찰서, 국토해양부이며, 해양, 수산, 건설, 부동산, 건축, 산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형사제3부는 지휘관

27) 2009년 국정감사 상계자료 참조.

서가 금정·동래경찰서이며, 강력, 과학수사, 사행행위, 유해환경, 소년, 피해자지원, 여성, 아동,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형사제4부는 지휘관서가 사하·강서·중부경찰서이며, 의약, 식품, 환경,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형사제5부는 지휘관서가 사상·북부 경찰서, 국세청, 철도공사, 소방관서이며, 교통, 조세, 소방, 철도, 교육, 문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사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를 수행한다.

(5) 공판부

공판부는 공판에 관한 사항, 형(재산형 제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상소에 관한 사항, 관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자유형집행정지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공판과는 위 공판관련 업무처리 및 검사의 공판 사무를 보조한다.

(6) 공안부

공안부는 지휘관서가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 노동청,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이다. 주요 사무는 공안·선거·노동관계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업무, 공안관련 자료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법령에 관한 사항,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이다.

(7) 특별수사부

특별수사부의 지휘관서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이다, 주요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공직비리, 기업비리, 범조비리, 첨단범죄의 수사 및 처리이다.

수사과에서는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및 검사의 수사사무를 보조한다. 수사지원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중요 특별수사사건의 수사지원, 심리생리분석업무를 수행한다. 범죄정보과는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이다.

(8) 강력부

강력부는 지휘관서가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이며,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조직범죄수사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강력사건의 수사 및 검사의 수사사무를 보조한다. 마약수사과는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의 수사 및 검사의 수사사무를 보조한다.

(9) 의사부

의사부의 지휘관서는 부산지방경찰청 의사과, 부산세관, 김해세관이다. 의사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관세, 외환, 국제거래사건의 수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0) 사무국

사무국의 총무과는 보안, 관인간수, 인사관리, 문서관리,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 물품구매, 국유재산관리,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건과는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 수사지휘,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 처리, 통계,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집행과는 재산형의 집행,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기록관리과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 영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V. 부산 검찰의 주요활동과 사례

1. 주요 수사활동

1) 마약범죄 수사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 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마약류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 모범적인 마약류퇴치 협력국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검찰은 국내마약류범죄에 대한 정책수립과 운용 및 수사지원 등 국내협력과 마약류범죄관련 국제형사사법 공조, 범죄인인도 등 국제공조수사에 관한 국제협력 그리고 마약류 관련 국내외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회의(ADLOMICO) 개최, 마약류범죄통계 관련 자료발간 등의 활동을 한다.

2012년 7월, 8월 9월 부산검찰의 부산지역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표 5-1>과 같다.

<표 5-1> 지역별 마약류사범단속현황²⁸⁾(2012년)

월별	지역	마약	향정	대마	합계(전국대비 %)
9월	부산	23	917	34	974(13.9)
	울산 경남	54	694	30	778(11.1)
8월	부산	23	828	31	882(14.1)
	울산 경남	53	618	28	699(11.1)
7월	부산	22	726	27	775(14.1)
	울산 경남	49	563	24	636(11.6)

그리고 2009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마약사범단속 활동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⁹⁾.

28) 대검찰청, 2012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

29) 2009년 국정감사, 상계자료 참조.

(1) 마약류사범 총 448명 인지, 96명 구속,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부산지방검찰청은 밀수 11명, 밀매 108명, 투약 255명, 기타 74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2074.36그램, 해쉬쉬 0.05그램, 대마초 615.77그램, 엑스터시 5정 등 압수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3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33명 등 마약류사범 재활 기회를 부여했다.

(2) 일본 야쿠자 연계 필로폰 국제밀매조직 적발

2009년 3월에는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국내 판매책 2명과 공모, 필로폰 약 1kg 판매를 시도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약 1kg을 압수했다.

(3) 국제우편물 이용한 필로폰 밀수 필리핀인 검거

2009년 4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특급우편물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국내로 밀수하려던 필리핀인 3명을 구속했다.

2) 부정부패수사

검찰은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사범 수사활동을 수행한다. 즉,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분야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반부패특별수사부의 수사역량을 집결하여 실질적, 체계적 단속을 도모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여 편파, 보복수사 시비를 철저히 차단하고, 형식적 실적위주의 단속활동을 지양하고, 선량한 공직자 보호 등으로 사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에서 수행하는 중점단속범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공직자 비리이다. 정책수립·인허가 등 업무관련 금품수수, 이권개입, 이권청탁 등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이다.

둘째,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이다. 즉, 공사발주·물품조달 등 이권관련 금품수수 등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행위, 지역토호세력의 이권 관련 불법 청탁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지역개발에 편승, 불법건축물, 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단속 목인 관련 비리 등이다.

넷째, 법조비리이다. 변호사, 전문브로커 및 사무장의 사건수임 알선 관련 금품수수, 판·검사 교체비 명목 금품 수수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찰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반부패특별수사부 활동을 강화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총괄하에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조직적, 체계적 단속 활동을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분야에 특별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둘째, 정보수집 활동의 강화이다. 범죄정보실 등 부산지방검찰청의 정보수집 전담부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리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수사정보 및 고질적·구조적 비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발굴한다. 또한 부정부패 신고전화,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제보창구를 적극 활용한다.

셋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검찰권 행사이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편파·보복수사 시비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

넷째, 사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즉, 형식적 실적위주의 단속활동을 지양하고, 선량한 공직자에 대한 음해성 무고행위를 엄단하고, 수사과정에서 충직, 선량한 공직자 발견시 관계기관 통보한다.

다섯째, 부산검찰은 숨은비리, 신중부패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의 부정부패외에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는 숨은 비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중부패에 적극대처하고, 교육분야 비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그동안 적극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패분야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그 동안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행한 부정부패사범 척결 활동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1) 한국주철관공업 수도관 납품 비리 등 사건

2008년 11월 부산검찰은 중국산 주철관을 국산 상수도관으로 속여 83여억 원 납품하고, 상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 12명에게 2억여 원의 뇌물 교부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및 대표이사 등을 구속했다.

(2) 군납 쇠고기 납품 비리 사건

2008년 12월 젓소를 육우로 속여 부정 납품한 업자 및 검수과

30) 2009년 국정감사, 상계자료 참조; 일간지(부산일보, 국제신문) 사건일지를 참고하여 정리함.

정에서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농협 직원 등 12명을 인지, 10명을 구속했다.

(3) 경찰 고위간부 뇌물수수 사건

2009년 8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시 지위를 이용, 주식거래를 가장하여 차명 계좌로 관내 기업인으로부터 8,000만원 수수한 前 울산·충북경찰청장 구속했다.

(4) 부산지역 택시 임단협 비리 사건

2009년 4월 부산검찰은 택시 임금단체협상 관련하여 사용자 측으로부터 2억 6천여만 원 수수한 한국노총 부산본부장 등 11명을 인지, 5명을 구속했다.

(5) 정부출연 연구자금 횡령 등 비리 사건

2009년 5월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출연 연구자금을 최고 10억여 원 횡령한 국립대학 교수 등 10명을 인지, 3명을 구속했다.

(6) 파산·면책사건 브로커 및 사기 파산 사건

2009년 6월 법무사 3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파산신청 대행한 브로커 및 사기파산 신청자, 명의대여 법무사 등 24명을 인지, 1명을 구속했다.

(7) 법조 관련 비리 사범 단속

2009년 검찰 간부를 통하여 수협 조합장의 선거 사건을 무마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수협 대의원회장 등 법조비리 사범 68명을 인지하고, 20명을 구속했다.

3) 조직폭력범죄 수사

마약밀매조직, 국제 테러조직, 폭력조직 등 3인 이상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여 저지르는 '조직범죄'로 국가·사회의 치안이 불안해짐은 물론이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직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범죄라고 하면 대개 폭력조직을 첫손에 꼽을 정도로 폭력조직의 폐해는 심각하다. 모든 폭력조직에는 두 가지 공통적인 징표가 있는데, 바로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무자비한 폭력행사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폭력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공업화가 급격히 진행하면서 서방과, 양은이파, 오비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폭력조직이 등장하여 영세상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도심 한복판에서 서로 칼부림사건을 벌임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폭력조직의 연합현상으로 거대 폭력조직이 등장할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폭력조직이 총기로 무장할 경우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와 같은 거대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1) 폭력조직의 변천과 검찰의 대처

우리나라 폭력조직의 변천사를 보면, 제1공화국시대인 1948년부터 1960년까지는 정치깡패들이 발호하여 깡패들의 세력조직화

가 이루어졌다. 제2공화국 시대인 1960년부터 1961년까지는 폭력배들의 발호가 극심하였다. 제3공화국 시대인 1961년부터 1972년까지는 신상사파와 호남파가 형성되었다. 제4공화국 시대인 1972년부터 1980년까지는 3대 패밀리인 양은이파, 서방파, OB파가 형성되어 혈투가 벌어진 시기이다. 제5공화국 시대인 1980년부터 1987년까지는 신흥조직의 번성기였다. 제6공화국 시대인 1987년부터 2009년까지는 폭력조직간의 보복폭행 등 조폭이 기승을 부렸고, 1990년에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어 대대적인 척결이 이루어졌다. 2010년 현재는 범죄와의전쟁 당시 구속되었던 조폭이 대부분 석방되어 조직을 재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을 가장하는 등 조폭이 합법화, 지능화하는 추세에 있다.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1980년대까지는 검찰 특수부 내에 조직폭력전담 검사를 두고 주요 폭력조직이나 수괴급 폭력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왔다.

1990년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광주 등 6대 지검에 강력부를 신설하고 폭력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서방파, 양은이파 두목 등 수괴급 폭력배 200여명을 포함하여 조직폭력배 23,000여명을 단속하여 폭력조직을 효율적으로 제압하였다. 특히 검찰은 폭력배 개개인을 단속하여 처벌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폭력조직원 전부를 범죄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대거 적발,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재건 자체를 차단해 왔다.

1990년 이후 폭력조직 167개파를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것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수감중인 폭력배들이 대거 출소한 것을 계기로 폭력조직을 재건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합법적인 기업가로 가장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검찰에서는 2005년 4월 28일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직폭력대책단」을 편성하여 범정부차원의 조직폭력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2008년 5월 7일에는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조직폭력배들의 국내외 연계를 차단하고자 2008년 11월 24일 「한-아세안 조직범죄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2009년 10월 27일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검찰청과 전국 9개 검찰청에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2010년 9월 10일에는 조직폭력 전담검사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2) 부산검찰의 조직폭력범죄 수사활동 사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직폭력범죄수사 활동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³¹⁾.

① 범죄단체 통합서면파·부전동파 인지

2008년 10월 이후 부산검찰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청부폭력 및 탈퇴조직원에 대한 보복폭력 등을 행사한 부산지역 조직폭력조직 2개파를 인지, 통합서면파 두목 등 총 63명을 구속했다.

31) 2009년 국정감사, 상계자료 참조; 부산일보, 국제신문(2008년~2009년) 참조.

② 폭력조직 관련 사행성 게임장 단속

2009년 부산검찰은 신20세기와 추종세력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여 실업주 등 3명을 구속했다.

4) 지적 재산권침해 범죄수사

지식재산권은 근대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이 형성된 개념으로 처음에는 생산수단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소유권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의한 생성물인 기술, 고안, 사상 등을 권리화한 무체재산권의 의미로 출발하였으나 인간 정신세계의 발달과 더불어 그 개념도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산업적 또는 영업적 소유권인 산업재산권과 문학적 또는 예술적 소유권인 저작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에 더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설계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한 더욱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화로서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 될 수 있고 국제교역에 있어 중요한 재화이므로 국제적 보호와 국제적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883년),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1883년) 등 많은 조약이 체결, 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조약들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제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철강 등 종래의 기간산업분야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첨단기술분야 또한 일본, EU등의 도전과 개발도상국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를 미국산업발전의 관건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1983년부터 외국 정부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를 요청하는 등 지식재산권보호의 강화에 주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대처노력을 하기에 이르렀다.

관련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

관련 정부조직에는 검찰청(지식재산권 전담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팀 : 저작권 특사경), 특허청(산업재산보호팀 :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관세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검찰조직은 <그림 5-1>, <그림 5-2>와 같다.

<그림 5-1> 관련조직³²⁾



32)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po/index.jsp>) 참조

<그림 5-2> 관련 검찰조직³³⁾



검찰은 전국 26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 전담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인터넷상 음악, 영상물 불법 다운로드·게시 등 저작권 침해사범, 가짜 유명상표 부착 가방, 운동화 등 제조 판매사범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사경, 문화부 특사경, 특허청 특사경 등을 지휘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표 5-2> 지식 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연도별)³⁴⁾

구별 \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단속 인원(명)	48,395	77,413	87,219	156,793	160,88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행한 지적재산권침해 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5-3>와 같다.

33) 상계 홈페이지 참조.

34) 대검찰청, 검찰백서(2009) 참조.

<표 5-3> 지적재산권침해사범처리현황³⁵⁾

(인원)

구 분 기 간	접수	처 리									미 처 리
		계	기 소			불 기 소			이송		
			소 계	구 공판	구 약식	소 계	기소 유예	형의 없음		기타	
2008. 9. 1~ 2009. 8. 31.	100% 18,709	(98.9%) 18,511 100%	4,103 (22.2%)	575 (3.1%)	3,528 (19.1%)	14,266 (77.1%)	3,215 (17.4%)	661 (3.6%)	10,390 (56.1%)	142 (0.8%)	(1.1%) 198
2007. 9. 1~ 2008. 8. 31.	100% 9,567	(99.4%) 9,505 100%	1,677 (17.6%)	120 (1.3%)	1,557 (16.4%)	7,754 (81.6%)	917 (9.6%)	256 (2.7%)	6,581 (69.2%)	74 (0.8%)	(0.6%) 62
대 비(%p)	+95.6	(-0.5)	(+4.6)	(+1.8)	(+2.7)	(-4.5)	(+7.8)	(+0.9)	(-13.1)	(0.0)	(+0.5)

2. 첨단수사활동

1) 과학수사

과학수사는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감정으로 수사를 하여 국민 인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수사장비의 첨단화, 감정 기법 연구 및 포렌식 수사관 양성을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검찰은 과학수사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에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84년 7월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가 설치되었고, 여러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의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과 디지털

35) 2009년 국정감사, 전계자료.

수사담당관실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에는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를 완공하여 대검찰청 내 모든 과학수사 부서가 이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신속·정확한 감정과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찰의 마약감식실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서 감정절차 및 감정방법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유지관리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마 모발감정을 개발 실시하였고, 국내 최초로 마약 지문감정센터(DSAC)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마약류의 국내외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새로운 과학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선진마약감정기법 전수를 위한 국제협력 및 신종마약류 등에 대비한 시험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업무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대검 마약감식실에 집중된 감정수요를 분산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면서 현장에서의 신속 정확한 감정지원 서비스를 위해 '부산마약감식팀'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이화학 분야 과학수사 감정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산마약감식팀'은 일반분석실, 정밀분석실 및 UPS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마약성분 확인을 위한 정성 및 정량분석 장비인 가스크로마토질량분석기(GC/MSD) 등 19종 36점의 감정정비를 확보하고 있다.

2) 기술유출범죄수사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세계 일류의 기술력 확보 및 제품생산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에서는 매년 막대한 자본을 들여 관련 기술을 연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매년 줄

어 들 지 않 고 있 다. 기 업 의 기 술 을 유 출 하 는 행 위, 특 히 해 외 로 기 술 을 유 출 하 는 행 위 는 기 업 의 기 술 개 발 의 지 와 국 가 경 쟁 력 을 약 화 시 키 는 결 과 를 초 래 하 기 때 문 에 검 찰 에 서 도 그 중 요 성 을 인 식 하 여 집 중 단 속 하 고 있 다. 이 러 한 기 술 유 출 범 죄 를 집 중 적 으 로 단 속 하 기 위 하 여 지 난 2007년 대 검 찰 청 중 앙 수 사 부 에 「기 술 유 출 범 죄 수 사 지 원 센 터」 를 설 치 하 여 기 술 유 출 범 죄 수 사 지 원 업 무 를 전 담 하 고 있 으 며,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기 술 유 출 범 죄 수 사 센 터」, 울 산 지 방 검 찰 청 「기 술 유 출 범 죄 수 사 센 터」 및 전 국 청 기 술 유 출 범 죄 수 사 부 서 에 서 산 업 기 술 유 출 범 죄 수 사 를 담 당 하 고 있 다. 침 단 산 업 기 술 유 출 범 죄 에 대 하 여 수 사 역 량 을 집 중 하 여 국 내·외 로 의 산 업 기 술 유 출 을 막 고, 국 가 주 요 기 술 에 대 한 유 출 방 지 책 마 련 및 수 사 력 을 강 화 하 고 있 다.

기 술 유 출 범 죄 는 기 업 의 영 업 비 밀 을 부 정 취 득 하 거 나 비 밀 유 지 의 무 를 위 반 하 는 범 죄 이 다. 관 련 법 률 은 「부 정 경 쟁 방 지 및 영 업 비 밀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과 「산 업 기 술 유 출 방 지 및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이 해 당 된 다. 수 년 간 많 은 연 구 인 력 과 비 용 을 투 입 하 여 개 발 한 기 업 의 침 단 산 업 기 술 이 경 쟁 국 또 는 경 쟁 업 체 로 넘 어 가 게 되 면, 기 업 은 투 자 의 욕 을 상 실 케 되 며, 결 국 국 가 경 제 에 도 막 대 한 손 실 을 초 래 하 게 된 다. 특 히 기 업 의 침 단 산 업 기 술 이 경 쟁 국 으 로 유 출 되 면, 국 가 경 쟁 력 이 약 화 되 는 등 기 업 뿐 만 아 니 라 국 가 적 으 로 도 큰 손 실 을 입 게 되 는 것 이 다. 기 술 력 이 커 지 고, 일 류 상 품 을 많 이 보 유 할 수 록 기 술 유 출 범 죄 의 유 형 도 다 양 해 지 고 있 다.

검 찰 의 기 술 유 출 범 죄 수 사 센 터 에 서 다 양 하 고 변 화 하 는 기 술 유 출 범 죄 에 적 극 대 응 하 기 위 하 여 기 술 유 출 범 죄 수 사 에 대 한 적 극 적 인 수 사 뿐 만 아 니 라 새 로 운 범 죄 유 형 에 대 처 하 기 위 한 수

사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범죄 신고접수 및 전문수사관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종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지구촌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외국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 및 기업,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망을 구축하여 국가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유출범죄수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⁶⁾.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체계적, 집중적 동향파악, 영업비밀 부정 취득 사용 사범,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 사범, 기술유출범죄 신고 접수, 기술유출범죄 수사기법의 지속적인 개발, 신종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국가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외국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체제 활성화, 유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망 구축 등이다.

3) 사이버범죄수사

인터넷이 사회생활의 일면으로 발전한 이후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피싱, 사기, 명예훼손 등 전통적 일반범죄의 무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고, 온라인뱅킹정보, 개인정보 등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해킹집단이 조직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주요정부기관 등을 대

36)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참조

상으로 한 '09년 7월 7일 DDoS공격 '11년 3월 4일 DDoS공격, '11년 농협전산망 마비 등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하는 '테러형 사이버범죄'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앞으로 급변하는 IT 환경에 따라 범죄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될 것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은 사이버범죄 수사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지난 1995년 서울지검에 「정보범죄수사센터」발족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대검 컴퓨터수사과 내에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2010년에는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내에 「사이버통제팀」을 설립하는 등 사이버범죄수사에 힘써 왔다. 특히, 2011년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창단하여 점점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에서는 해킹, DDoS 공격 및 악성코드 유포, 정보통신망 마비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 사이버범죄 및 분야를 막론하고 일상화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범죄신고 접수와 함께 사이버범죄를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사기법 개발,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G8국가로 이루어진 「사이버범죄수사 24시간 국제공조 네트워크(G8 Network for 24Hour High tech Crime)」에 2000년 12월 가입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³⁷⁾.

37) 대검찰청 홈페이지 참조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과 대처 또한 쉽지가 않다. 따라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수사의 주요 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동향 파악, 사이버범죄 신고접수, 해킹·악성코드·바이러스 유포사범, 통신·에너지·운송·자원 등 국가기반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테러 행위, 사이버범죄를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사기법 개발,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 사이버범죄수사 24시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적 수사공조체제 유지,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관 양성 등이다.

4) 범죄수익환수 수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³⁸⁾」이 제정되어 중대 범죄에 대해서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기 위하여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 발맞추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회계분석수사, 금융거래추적수사, 범죄수익환수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범죄수익환수 수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을 비롯한

3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타법개정]

전국 검찰청에는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였다.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하여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수익이 범죄자금으로 재투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막아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범죄수익환수수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첫째, 회계분석 수사이다. 즉,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검찰청은 기업비리, 회계부정 등 화이트칼라범죄 수사, 회계자료 압수수색 및 분석,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

둘째, 금융거래 추적수사이다. 즉 부패사범, 기업비리사범 등 경제적 이익획득과 관련된 범죄수사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금융계좌 추적 및 관련자 조사, 그리고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 수사, 그리고 부패, 마약, 조직범죄 및 각종 경제범죄에 관련된 범죄수익의 추적 및 몰수, 추징을 하고 있다.

셋째, 자금추적 수사이다. 이는 부패범죄 수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사방법으로서 금융거래 정보라는 객관적 물증을 압수하고 범죄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고도로 세탁된 자금까지 추적하여 동종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수사의 일종으로서, 무고한 자의 처벌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3. 지원활동

1) 소년선도보호

소년선도보호제도는 범죄예방위원³⁹⁾이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 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방법에는 접촉선도와 원호선도로 구분된다,

접촉선도는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이다. 원호선도는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이다.

검찰의 소년선도보호에 관한 주요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운영한다.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여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에 걸쳐 소년선도보호지침이 개정되어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둘째,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이다. 1985년 3월 5일부터

39) ('98. 9. 1. 개정 법무부 훈령제400호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에 의거 소년선도위원이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과 함께 통합되어 범죄예방위원으로 명칭 변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 일부 청에서 시험실시해 오던 이 제도를 1986년 1월 13일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지검과 재경지청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1994년 4월 15일부터 관내에 구치소(교도소)가 있는 지청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선·교화 가능한 비행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단시간 동안 교정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장기수형자로부터 직접 범행동기와 격리생활의 고통에 관한 체험적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 절차는, 먼저 검사가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년을 선정하여 그의 동의를 받고 교도소와 협조, 매월 1회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그들을 교정시설로 인솔해 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마친 소년에 대하여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셋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다.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법 제15조 제3항⁴⁰⁾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620호⁴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회에 의한 선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40) 동법 제15조 제3항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41) 법무부 훈령 제620호(2008. 6. 3.)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우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에 대상은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유예 대상은 소년법에 제한을 두지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넷째, 학교담당검사제이다.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폭력 근절 지시에 의거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 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이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⁴²⁾에 의거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내 수 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42)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96. 6. 28. 대검 강력 61330 - 609)

다섯째, 우범소년결연사업이다. 우범소년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지검 및 산하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하의 「학교 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씨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2)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와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장 못지않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기회 확대,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증인 신변보장, 범

죄피해자 구조금의 신속지급, 민간 자원봉사 활동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고용 서비스 제공과 교육훈련 등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2008년 1월에 대검찰청에 피해자인권과가 설치되어 위와 같은 일을 총괄하게 되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에서는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검찰청 별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 전담 검사와 지원담당관이 배치되어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08년의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19건에 대하여 1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급액이 3,200만원 증가한 것이다.⁴³⁾

부산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1) 범죄피해자 관련 양형자료 적극 제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정도 등을 직접 확인,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감기간 중 총 54건의 범죄피해자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했다.

(2)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 운용

범죄피해자 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자 상담 577건, 피해자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 등 각종 통지 1,325건을 시행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상담, 법률·의료지원 등을 실시했다.

43) 2009년 국정감사, 상계자료 참조.

VI. 결 론

우리나라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이며, 시민들에게 형사사법 서비스(Criminal justice service)를 제공하는 최상의 기관이다. 이는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이기 때문이다.

검찰사무는 행정사무이고, 검찰청은 행정기관이지만, 그 기능과 조직이 사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준사법적 기능 또는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일컬어지며,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부산 검찰은 주요 수사활동 뿐만 아니라, 첨단수사활동, 지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더욱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이나 법률지원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와 계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사법 절차개요나 법적분쟁 예방법, 산업재해 보상 등에 대한 교육 및 개별 상담을 통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재한 외국인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이 겪는 법률적 고충에 대해 법률 상담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지식 강연이 필요하다. 초·중·고 방문준법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의식 및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대상 법질서 강연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폭행사고, 보이스피싱, 민사제도 등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률지식에 대한 강연을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친선도모를 위한 활동도 필요하다. 특히, 가까이 있지만 직접 방문이나 소통의 부족으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나 주민 초청 행사 등을 통하여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증진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부산 검찰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검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 국정감사자료, 2010. 2009년 국회국정감사, 2009, 「현황과 업무」, 부산지방검찰청. 2009년 국회국정감사. 2009, 「현황과 업무」, 부산고등검찰청.
- 김운태, 1992, 『미군정의 한국통치』, 박영사.
- 김일수, 2010,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지평』, 세광출판사.
- 김종구, 2004, 『형사사법개혁론』, 법문사, 2004
- 김윤상, 2003, 「수사 지휘권과 인권보장」, 『형사정책』 제15권제1호. 대검찰청(편2), 1976, 『한국 검찰사』
- 대검찰청, 1986, 검찰연보.
- -----, 1986, 한국검찰사.

- -----, 1983, 검찰행정편람.
- 문준영, 2004,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박노섭, 2005, 「사법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 조항과 검사의 사법적 통제」, 『비교 형사법연구』 제7권제1호.
- 박창호외4인, 2004,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 박연철, 2009, 「특별법무연수원, 수사지휘론, 2003 검사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 배종대 외 3인 공저, 2011, 「신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 백광훈·신동일·이천현, 2003.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름호.
- 송병기·박용욱·박한설(편), 1970,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I』, 대한민국국회도서관.
- 신양균, 2007, 『형사소송법』, 법문사, 제4판.
- 이완규, 2005,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체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이재상, 2006, 『형사소송법』, 박영사, 제6판보정판.
- 하태훈, 2002, 「검찰의 인사·조직상 독립성 확보과제」,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 부산고등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highbusan/index.jsp>)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index.jsp>)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 검찰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부산 검찰의 주요 활동을 그 사례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조직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검찰이 무엇이며,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고찰한다. 아울러 검찰조직에 대해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시대 구분은 근대 이전의 검찰활동과 근대 이후의 검찰활동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근대이전의 검찰활동은 고조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이며, 근대 이후의 검찰활동은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로 구분한다.

셋째, 부산검찰의 역사적 변천을 부산고등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연혁과 현황, 조직, 그리고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넷째, 부산 검찰의 주요 활동은 주요 수사활동, 첨단 수사활동 그리고 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주요 수사활동은 마약범죄 수사, 부정부패 수사, 조직폭력범죄 수사, 지적 재산권침해 범죄수사로 구분한다. 첨단 수사활동은 과학수사, 기술유출범죄 수사, 사이버범죄 수사, 범죄수익환수 수사로 나누고, 지원활동은 소년선도보호,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주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부산검찰이 앞으로 해야 할 검찰활동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핵심주제어 : 검찰, 부산검찰, 검찰청, 수사, 범죄

【Abstract】

**The study on the history and
major activities of the Busan prosecutors**

Choi, jong sool / Dong-eui Univ. Dept. Police Administration

This paper is the study of the history and activities of the Busan prosecutors.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shall review in the history of Korean prosecutors. The history of Korea prosecutors is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liberation. The Former is divided into Gojoseon era,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Koryo Dynasty, the Chosun dynasty, the Gabo Reform of 1894 , Japanese colonial rule.

Second, It examines the role and organization of the prosecution in Korea and the Busan prosecutors also. In other words, this paper discus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rosecution in our society. And We look a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prosecution and the Busan prosecutors.

Third, we will learn about the main activities of the Busan prosecutors. It is the main investigative activities,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support activities. The main investigative activities is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s, narcotics investigations and so on.

66 / 港都釜山 제29號

In short, Busan prosecutors should be for civil prosecution and prosecutors to serve the citizen

Key Words : Prosecutors, Busan Prosecutors, District Attorney's Office, Investigation, Crime

투 고	심 사	완 료
2012. 10. 29	2012. 11. 30	2012. 12. 15